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83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0월 6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동작구가 설치·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비공개 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7조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회의록의 공개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회의록의 공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제7조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 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

【 관 계 법 령 】

▶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